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2373 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보미(기소), 유승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익현(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14. 선고 2024고단6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채권 추심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 폭행, 불안감 유발 등의 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정 _____

 판사 김양호 _____

 판사 김성열 _____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601 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김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형기(국선)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와 직장동료 관계로서, 피고인이 2021. 10. 1.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변제기일인 2021. 12. 10.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5. 17:2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어디야? 오늘 닥치고 너희 집 갈게. 씨발한 번 보자 조금 이따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떡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1. 각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 협박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2. 16.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 추심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 폭행, 불안감 유발 등의 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



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향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 _____



별지

범 죄 일 랫 표

연 번	범행일자	범행방법
1	2021. 12. 15. 17: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어디야? 오늘 닥치고 너희 집 갈게. 씨발 한번 보자 조금 이따가."라고 협박
2	2021. 12. 15. 18: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 집 앞이거든 지금. 너 죽여버리고 싶다. 빨리 와라."라고 협박
3	2021. 12. 15. 19:27경	대구 달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
4	2022. 11. 3. 20: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단 500 구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때 또 연락 안되고 이러면 다 찾아갈 거예요. 형 집도 가고, 형 아버지 집도 가고 해가 진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라고 협박
5	2022. 11. 17. 17:23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
6	2022. 11. 24. 18:0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요일 3시 전까지 무슨 연락 없으면 진짜 죽여버린다. 너네 집 가서 발로 차버린다."라고 협박
7	2022. 11. 28. 16: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죽을래 진짜? 너 애고 나발이고 다 죽을래? 내가 오늘 씨발 갈까? 돈 안 주면 죽여버린다. 오늘 내로 나한테 돈 입금 안하면 나 오늘 찾아간다."라고 협박
8	2022. 11. 29. 18: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진짜 죽는다. 각오해라."라고 협박
9	2022. 12. 27. 15: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진짜 어떻게든 너 감방 보낸다. 목요일날 돈 못 구했다고 하면 너희 집하고 너희 아버지하고 다 간다. 가서 경찰 동원해서 진술 받고 내 알아서 다 한다."라고 협박
10	2023. 1. 16. 16: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빠따 들고 갈게."라고 협박
11	2023. 2. 16. 20:00경	달서군청 9층 흡연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멧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함
12	2023. 4. 7. 19:5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죽을래. 씨발놈아 딱 기다려 개새끼야. 나 지금 간다."라고 협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13	2023. 4. 22. 21:24경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14	2023. 6. 26. 18:4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너희 집 갈테니 거기 있어라. 씨발새끼야 너 죽었다 오늘. 나 오늘 10시에 너희 집 찾아갈게"라고 협박